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 환경부공고 제2006-312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의 시 지역에 위치해 있던 도의 주사무소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이전한 지역은 주변 환경의 악화 없이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액이 최대 2.43배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의 주사무소가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도청소재지의 읍·면지역은 종전 기타지역 지역계수를 적용하도록 함 (안 별표7 제3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 가목내지 다목 비고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역시, 도청소재지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동(시의 동으로서 당해 시의 시청소재지가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역은 기타지역의 지역계수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별표 7 제3호 가목내지 다목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환경부 공고 제2006-305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중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대해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범위를 개별사업이 별표

1 제1호가목 내지 타목, 하목 내지 더목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함(별표 1 제1호파목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파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단, 개별사업이 가 목 내지 타목,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하목 내지 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공고 제2006-30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를 마련

2.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고, EURO-4 기준적용 이전에 제작되어 운행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종으로 함.

1. 제68조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 한 자동차

2. 제작당시 제 67조 별표20 나목 5)의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법제3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를 만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제68조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 한 자동차

2. 제작당시 제 67조 별표20 나목 5)의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공고 제2006-295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09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관계장관회의·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29)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별표 5).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dB(A)”을 “dB(V)”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부 공고 제2006-294호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0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장관회의(2005.12) 및 감사원감사결과(2005.10) 사회·경제환경분야의 평가항목 조정 권고와 평가항목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정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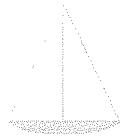
2. 주요 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의 분류체계를 현행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에서 환경매체중심의 환경권 구분형으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으로 조정

- 타 법령에서 관리되고 있거나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적은 사회·경제분야의 평가항목 중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자체항목을 평가항목에서 제외(안 별표 2)

※ 평가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지역개황(특성) 조사와 대기, 소음·진동 등 세부 평가항목에서 현황조사 및 환경적 배려를 명시도록 함.

- 현행 보호대상 동·식물 위주의 조사 및 평가에서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현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동·식물’ 항목을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구분 함.



– 지원절약 및 재이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항목을 친환경적 자원순환항목으로 명칭변경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3호 중 항목별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동 서식 제8호가록 중 조사 분야별 조사자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본문의 “동·식물”을 “동·식물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적용례) 별표 2 개정 규정 제4호 나목의 자연환경자산은 이 규칙이 시행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환경영향평가항목 (제5조관련)

1.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2. 수환경분야

가. 수질(지표·지하)

나. 수리·수문

다. 해양환경

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지질

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나. 소음·진동

다. 위락·경관

라. 위생·공중보건

마. 전파장해

바. 일조장해

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 비교 : 제6호가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인구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내용에 한한다. ↗

